

의안번호	제 95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12월 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5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2월 1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중인 '도정 정책자문단 조례'의 유효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간을 연장코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 유효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(안 제11조)  
※ (현행) “2014년 12월 31일까지” ⇨(개정) “2018년 12월 31일까지”

3. 의안 전문 : 불 입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입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6. 비용추계서 : 불 입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2014년 12월 31일”을 “201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유효기간)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<u>2014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하되,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유효기간) ----- <u>2018년 12월 31일</u>-----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##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 민·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·운영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비용 등

### 3. 관련조문

- 안 제9조(수당)
  -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제8조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
- 나. 추계의 전제 : 자문단 5개 분과 70명, 전체 및 분과별 워크숍 개최(각회)
- 다. 추 계 결 과 : '15년부터 향후 4년간 총 160,000천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4차년도 (2018년)
<b>세 출</b>	16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
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및워크숍비용	16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

※ 연간 소요비용 : 40,000천원정도 (운영수당 20,000천원, 워크숍비용 20,000천원)

### 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박인용